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. 11. 22 선고 2023가단573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8.

판결 선고2024. 11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3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기간을 주문

제1항과 같이 단축하였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가현

별지